

## 특수건강진단 분석실 소개

### 01 ICP\_MS

ICP\_MS는 중금속(납, 인동 등)을 분석하는 장비로 산업보건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AAS 장비보다 낮은 농도까지 검출이 가능하여 미량 원소 분석에 탁월합니다. 또한 재현성이 좋아서 높은 수준의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

### 02 HSS\_GC\_MS

HSS\_GC\_MS는 유해 유기화합물을 분석하는 장비로 미지 시료의 정량, 정성 분석에 특화되어 있습니다. 특히 헤드스페이스를 활용한 시료 주입과 질량분석기를 활용한 검출로 o-cresol에 대한 안정적인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

### 03 HPLC

HPLC는 유해 유기화합물을 분석하는 장비로 고정상과 이동상의 상호작용으로 혼합물을 분리하는 장비입니다. 독일에서 생산된 HPLC를 활용하여 피크 분리능이 뛰어나고 세밀한 분석이 가능하여 안정적인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

### 04 GC\_FID,NPD

GC\_FID,NPD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에 불꽃이온화검출기와 질소인 검출기가 장착된 분석 장비입니다. 특수 검진 분야에서 hexan, DMF 등 다양한 유기용제들의 생물학적 노출지표를 분석하는데 사용됩니다.

## 고객센터 안내

상담전화	사이트 안내	회사 메일
1522-8002	www.bmlhc.com	bmlhc@bml.kr

## 진료 시간 안내

평일	토요일/공휴일	점심시간
08:00~17:00	휴진	12:00~13:00

건강검진 및 각종 문의 사항은 비엠엘의원 고객센터를 통해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## 비엠엘의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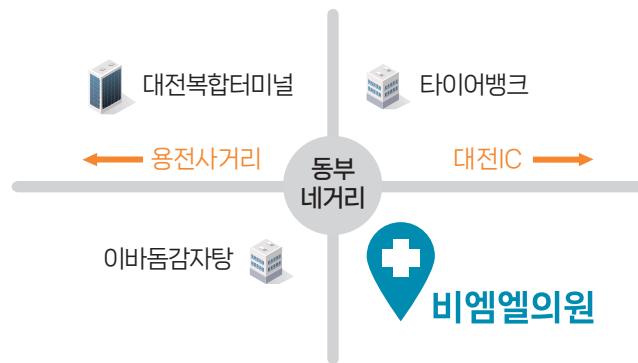


건강 검진실

진단검사의학과 검사실

화학적유해인자 분석실

## 오시는 길



비엠엘의원 | 대전 동구 동대전로 332

분원 | 서울 DMC 건강의원 서울상암분원 : 서울 마포구 성암로 179 한샘사옥 15층

근로자의 건강을 위한  
**특수건강진단**  
유해인자 분석실



# 특수건강진단 안내

## 01 특수건강진단이란?

'특수건강진단'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유해 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.

## 02 특수건강진단 대상

상시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으로 '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2'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



## 03 특수건강진단의 종류

특수(정기)	유해인자별로 정한 주기에 따라 실시 (특수검진 실시주기 아래표 참조)
배치전 건강진단	-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를 다루는 업무에 배치되기 전 배치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 ※ 입사 직후 바로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를 다루는 업무에 배치 될 예정인 경우 입사전에 배치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.
수시건강진단	-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 중 급성으로 증상이나 의학적 소견이 발생하는 경우 - 직업관련성이 의심되는 천식, 피부질환 관련 증상을 호소 하거나 의학적 소견을 보이는 경우
임시건강진단	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의하여 실시 (직업병 유소견자 다수 발생 시)

## 04 특수건강진단의 검사비용

- 유해인자에 따라 금액은 상이합니다.
- 2차 검진비용은 추가될 수 있습니다.
- "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"입니다.

## 05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

구분	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	배치후 첫번째 특수건강진단	기본주기
1	N,N-디메틸아세트아미드	1개월 이내	6개월
	디메틸포름아미드		
2	벤젠	2개월 이내	6개월
3	1,1,2-테트라클로로에탄, 사염화탄소	3개월 이내	6개월
	아크릴로니트릴, 염화비닐		
4	석면, 면분진	12개월 이내	12개월
5	광물성분진, 목재분진, 소음 및 충격소음	12개월 이내	24개월
6	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	6개월 이내	12개월

### 건강진단 주기

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후에는 유해인자별로 정해진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.  
※ 배치전건강진단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별로 1~12개월 이내, 이후에는 6~24개월 주기로 실시합니다.

## 06 특수건강진단 실시방법 및 위반시 벌칙

### 1. 실시방법

- 1)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선정
- 2)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 건강진단 의뢰
- 3) 유해인자별 배치전건강진단 및 주기적인 특수건강진단 실시
- 4)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조치이행

### 2. 위반시 벌칙

- 1)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**1,000만원 이하 과태료**
- 2)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 결과를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한 경우 **500만원 이하 과태료**
- 3)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·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**300만원 이하 과태료**

## 07 "야간작업" 실시 대상 및 실시 시기 및 주기

### ✓ 실시대상

- 1)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
- 2)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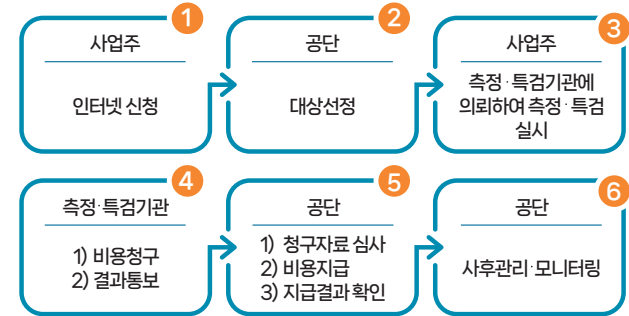
### ✓ 실시 시기 및 주기

- 배치전
- 배치 후 첫번째: 6개월 이내
- 주기: 12개월

- 1) 해당 작업의 근로시간이 상시적으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시간에 포함 되는 경우 해당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번째 건강진단을 실시함
- 2) 배치 후 첫 번째 검진을 받은 날부터 1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 
→ 일반건강진단과 동시 실시가능

## 08 소규모사업장 건강디딤돌 사업

### | 사업절차



### || 지원금액

지원대상	지원금액
50인 미만	- 30인 미만 : 특검비용 전액 지원 - 30인 이상 50인 미만 : 특검비용의 90% 지원
공동주택	특검비용의 90% 지원
건설일용직	- 50억 미만 : 특검비용 전액지원 - 50억 이상 800억 미만 : 특검비용의 70% 지원 - 800억 이상 : 특검비용의 60% 지원